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北韓의 對南政策

1993. 7

金台鎰(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全相仁(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I. 序 論	1
II. 「10大綱領」宣言의 背景	2
1. 現狀維持的 競爭戰略으로의 移行	2
2. 南北韓 關係改善의 行動方針	4
3. 統一戰線戰術의 持續	6
III. 「10大綱領」 및 「4個 對南要求事項」의 內容 分析	7
1. 「10大綱領」의 內容 分析	7
가. 民族大團結의 意義	7
나. 民族大團結의 目標	10
다. 民族大團結의 理念的 基礎	12
라. 民族大團結의 原則	14
마. 民族大團結의 方途	15
(1) 政爭의 中止와 團結	15
(2) 和合과 信賴의 圖謀	16
(3) 民主主義의 實現	17
(4) 物質的·精神的 財富의 保護	18
(5) 接觸·來往·對話	19
(6) 全民族的 連帶性의 強化	21
(7) 祖國統一 貢獻者에 대한 評價	21

2. 「4個 對南要求事項」의 內容 分析·····	23
IV. 「10大綱領」 宣言 以後 北韓의 對南政策 動向·····	24
1. 南韓의 體制力量 弱화를 위한 統一戰線戰術 推進·····	25
가. 書信 發送·····	25
나. 放送을 통한 宣傳·煽動·····	26
다. 汎民族大會 開催 推進·····	29
2. 特使交換 提議·····	30
V. 結 論·····	33
1. 北韓의 對南政策 展望·····	33
2. 南韓의 考慮事項·····	35
〈別添〉 「10大綱領」 內容 要約·····	37

I. 序 論

- 1993년 4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정무원 총리 姜成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 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라는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最高人民會議는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姜成山은 제안설명을 통해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하 「10大綱領」)의 내용과 그 의의를 밝히면서, 남한정부에 대해 4개 요구사항(이하 「4個 對南要求事項」)을 제시하였음.
 - 「10大綱領」은 민족대단결의 意義를 밝히고 있는 前文과 민족대단결의 目標, 理念的 基礎, 原則, 方途 등을 각기 지적하고 있는 10가지 항목의 綱領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大綱領」과 「4個 對南要求事項」은 국내외 상황변화에 적응하려는 북한의 對南政策 基調를 밝힌 것인 바, 본 연구는 「10大綱領」 및 「4個 對南要求事項」 宣言의 배경, 내용 그리고 宣言以後의 사태추이를 분석하여 북한의 對南政策方向을 전망하려는 것임.

1) 「로동신문」, 1993년 4월 8일.

II. 「10大綱領」 宣言의 背景

- 「10大綱領」 宣言은 ① 戰略的 水準에서 現狀維持的 競爭戰略으로의 移行, ② 行動方針 水準에서 南北韓 關係改善의 行動方針 再考, ③ 戰術的 水準에서 統一戰線戰術의 鬭爭方向 變化라는 북한 대남정책의 흐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²⁾

1. 現狀維持的 競爭戰略으로의 移行

- 1950년대 戰爭戰略의 실패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대남전략은 남조선혁명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조선으로 지배하려는 霸權的 革命戰略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霸權的 革命戰略의 조건을 구성하는 다음 세가지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北韓에서의 革命基地 建設은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발전노선의 한계, 사회주의 불력의 붕괴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와 그에 따른 政治·

2) 여기에서 말하는 戰略, 行動方針, 戰術은 분석적 개념으로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임. 여기에서의 戰略은 장기적인 행동계획 또는 목표이고, 戰術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기적인 행동·수단 또는 계략을 의미함. 行動方針은 전략과 전술의 중간에 위치한 개념으로서 전략의 테두리안에서 취해지는 행동을 통일적으로 지칭하며, 전술보다는 유효기간이 긴 것이 특징임.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사상」 (1991 봄), pp. 98~120.

軍事的 力量 및 社會統制의 不安定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國際的 革命力量의 強化는 탈냉전과 북방3각관계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지원세력의 상실, 탈이념화·실용주의화로 인한 비동맹국가들과의 연대 약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南韓에서의 革命力量 培養은 남한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성공적 실현 및 이를 바탕으로한 안정적인 체제통합의 달성, 군사안보적 기반 강화 등으로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음.

○ 이와 같은 狀況變化에 적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1980년대 이후 「現狀維持的 競爭戰略」으로 移行하고 있음.³⁾

- 「現狀維持的」이란, 北韓이 김일성·김정일체제의 존속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수세적 조건하에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배제하기 위하여 분단상태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戰略的 目標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임.
- 「競爭戰略」이란, 북한이 당규약 前文에서 밝히고 있듯이 戰爭과 南朝鮮革命을 여전히 대남정책의 「代案」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질서의 변화, 내부적 체제위기, 남북한 국력격차의 확

3)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서진영, “탈냉전시대의 북한의 통일정책”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유석열,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북한연구」(1993 봄), pp. 7~31.

대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남강경노선을 완화하는 가운데 北韓體制力량의 강화와 南韓體制力량의 弱화라는 體制競爭을 戰略的 目標로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임.

- 「10大綱領」의 내용은 霸權的 革命戰略의 조건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現狀維持的 競爭戰略」으로 移行하고 있다는 構造的 水準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2. 南北韓 關係改善의 行動方針

- 北韓은 198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형식의 남북대화와 접촉을 對南 政策의 行動方針으로 추진해 왔음.
 - 북한은 1970년대의 남북대화 교착 이후 1984년 9월 남한의 수재민들에게 보내는 적십자 구호물자 인도를 계기로 南北對話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단교환,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등 다양한 南北對話를 추진하였음.
 - 1990년 9월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이 개최된 이후 제8차 회담까지 진전되는 동안 남북간에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12개 문건이 채택·발효되었고, 본회담을 포함하여 12개의 協議·履行機構가 구성되었음.
- 북한이 이처럼 남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추진한 것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對美·日 關係改善을 도모하고, 서방세계와 남한

으로부터 제기되는 체제위협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체제위기의 해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얻음으로써 體制危機的 狀況에 적응하려는 의도에서였음.⁴⁾

-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의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도를 실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核武器開發 의지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가시화되자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美國과의 직접 접촉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남북상호핵사찰 등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은 이 결정에 항의하여 남북대화 거부를 선언하였음.
 -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國際的 制裁措置가 검토되기 시작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는 일련의 과정에서,⁵⁾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4)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이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선결과제였음. 특히 미국은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5) IAEA는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 수락을 거듭 요청했지만(3월 13일, 3월 20일) 북한은 이를 거부했으며, IAEA 이사회는 1993년 4월 1일 특별사찰을 거부한 북한을 안전협정 불이행 국가로 규정,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全星勳, “北韓 核問題의 現況과 展望,”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5~48.

직접 접촉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다루는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강화해 왔다는 사실은 남한과의 대화·접촉이라는 기존 行動方針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대화·접촉을 行動方針으로 추진하도록 했던 요인들이 아직 변화하거나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바, 「10大綱領」의 내용은 이와 같은 북한의 필요와 의도를 담고 있음.

3. 統一戰線戰術의 持續

- 戰術水準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한체제와 정치지도자를 비방하였고, 남한에 간첩을 남파하였으며, 남한내의 변혁운동세력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統一戰線戰術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이 그 동안 추진해 온 統一戰線戰術의 투쟁방향은 「반파쇼민주화」와 「반미자주화」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새정부 출범이후 과거 역대정부에 대해 취해 오던 「파쇼정권 타도」와 같은 틀에 박힌 非難 攻勢를 자제하는 등 統一戰線戰術의 鬭爭方向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그 의도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은 새로 출범한 文民政府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

와 정통성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반파쇼 민주화」라는 전술적 투쟁방향이 실효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반미 자주화」를 중심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남한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확대하여 남한정치체제의 통합능력을 약화시키고, 남한정부의 對北政策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임.

○ 「10大綱領」의 내용은 북한이 統一戰線戰術을 여전히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統一戰線戰術의 鬭爭方向이 「반미 자주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Ⅲ. 「10大綱領」 및 「4個 對南要求事項」의 內容 分析

1. 「10大綱領」의 內容 分析

가. 民族大團結의 意義

○ 다음은 「10大綱領」의 前文이며, 이 前文은 民族大團結의 意義를 밝히고 있음.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

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 북한이 말하는 民族大團結의 意義는 민족전체가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民族大團結이란 용어를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음.
 - 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밝힌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음.
 - 1980년 10월 10일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라는 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통일의 3대원칙으로 역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제시하였음.
- 다만 주목해야 할 하나의 변화는 1990년대 이전까지 民族大團結이라는 言述은 통일 3대원칙의 하나로서 거론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準據概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 1991년 8월 1일 김일성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이 항일투쟁 및 해방 후 새로운 사회건설, 통일투쟁의 근본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⁶⁾
- 그 연장선상에서 「10大綱領」의 前文은 民族大團結을 북한 대남정책의 기초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準據概念으로 제시하고 있음.
- 북한이 民族大團結을 가장 중요한 準據概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내외정책 및 대남정책 등 다목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임.
- 외부세계에 유화적 자세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국제적 교류·협력을 얻어내려고 함.

6) 김일성은 민족대단결의 연원으로 1936년 반일민족통일전선 조직인 조국광복회를 기반으로 한 항일혁명투쟁 과정에서 민족적 단결의 전통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고, 해방후 자신이 “인민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할 것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음. 김일성은 이 자리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입니다”라고 했음.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 내부적으로는 북한체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치·경제적 資源動員을 도모하려고 함.
- 남한의 체제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統一戰線戰術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려고 함.

나. 民族大團結의 目標

- 다음은 「10大綱領」의 제1항의 내용이며, 제1항은 民族大團結의 目標을 밝히고 있음.⁷⁾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뿔뿔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 북한이 말하는 民族大團結의 目標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의 창립인 바, 그 구체적 형태는 「1民族, 1國家, 2制度, 2政府의 聯邦國家」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이 통일국가의 형태로 주장하는 연방제는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제도와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

7)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헌장(1), 자주적인 통일국가창립은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 「로동신문」, 1993년 4월 24일.

- 1990년 10월 18일 김일성은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한국대표단과의 회견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자고 제의하였음.⁸⁾
-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두개 정부」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다시 확인한 바 있음. 김일성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의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론은 나라의 분열을 끊임없이 지속시키자는 것이며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어느 측에도 접수될 수 없다” 그리고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순탄하게 풀어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기자”고 했음.⁹⁾
- 그 연장선상에서 「10大綱領」의 제1항은 民族大團結의 目標로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바, 이것은 북한이 그들의 霸權的 革命戰略을 위한 條件이 弱화되어가는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남북한 制度의 統一을

8) 「로동신문」, 1990년 10월 19일.

9)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반대함으로써 최소한 남한으로의 吸收統一을 피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음.

다. 民族大團結의 理念的 基礎

- 다음은 「10大綱領」의 제2항의 내용이며, 제2항은 民族大團結의 理念的 基礎를 밝히고 있음.¹⁰⁾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존중하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 북한이 말하는 民族大團結의 理念的 基礎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 곧 民族主義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民族主義라는 정치적 입장을 부정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를 강조하기 시작했음.¹¹⁾
 - 1991년 8월 1일 김일성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조

10) 리대영, “민족단합의 대현장(2), 전민족대단결의 리념적 기초,” 「로동신문」, 1993년 4월 26일.

11) 서재진,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의 관계,”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51~90.

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계급, 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이며, “민족이 있고 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¹²⁾라고 하여 민족적인 것이 계급적인 것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음.

○ 그 연장선상에서 「10大綱領」의 제2항은 民族大團結의 理念的 基礎로 民族主義를 강조하고 있는 바, 이것은 민족주의 개념에 대하여 남북한 주민이 정서적 공감대와 이념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임.

－ 대내정책 차원에서는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주민을 동원하는데 필요한 이념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북한이 민족적 범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社會主義圈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며, 그 목적은 가중되는 國際的 孤立, 經濟難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民族主義의 言述體系로써 북한주민을 정치·경제적으로 동원하려는 것이었음.¹³⁾

12)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13) 김일성과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가중되는 체제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계속 강도 높게 강조하여 왔음. 그 구체적 사항으로는 1986년 8월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 김일성의 1988년도 1989년도 신년사 및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의 시정연설 “우리나라

- 대남정책 차원에서는 남한정부를 반민족적·외세의존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한내에서 反外勢民族主義를 추구하는 진보적 통일운동세력과 統一戰線戰術을 시도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¹⁴⁾

라. 民族大團結의 原則

- 다음은 「10大綱領」 제3항의 내용이며, 제3항은 民族大團結의 原則을 밝히고 있음.¹⁵⁾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변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 북한이 말하는 民族大團結의 原則은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의 1991년 5월 5일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일성의 1991년 8월 1일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김일성의 1992년 2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과의 담화 등을 들 수 있음. 이와 함께 1985년 이후 북한에서는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논문들이 대거 출판되었고, 1989년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단행본이 출판되기도 했음.

14) 북한은 “민족의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라고 하여 民族主義를 반외세·자주의 관점에서 정의하였음.

15) 조해성, “민족단합의 대현장(3),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로동신문』, 1993년 4월 28일.

고 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10大綱領」의 제3항이 民族大團結의 原則으로 들고 있는 「공존·공영·공리의 도모」는 종래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사항인 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북한의 「공존·공영·공리의 도모」 주장은 「民族福利, 共存共榮」 등 남한 신정부의 통일정책 基調에 대해 원론적으로 和答한 것임. 북한은 이를 통하여 남한의 통일정책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誘導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 북한은 이와 같은 유화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태도의 표명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를 찾고, 이를 통하여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國際的 孤立을 타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 북한의 「공존·공영·공리의 도모」 주장은 남한과 서방세계의 對北干涉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

마. 民族大團結의 方途

- 「10大綱領」의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는 民族大團結의 方途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1) 政爭의 中止와 團結

- 다음은 「10大綱領」 제4항의 내용이며, 제4항은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정쟁의 중지와 단결」을 제시하고 있음.¹⁶⁾

4.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증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10大綱領」 제4항에서 「정쟁의 중지와 단결」을 민족대단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하는 북한의 의도는 體制危機를 가중시키고 있는 외부적 압력을 피하려는 것임.

— 북한은 이를 통하여 김일성지배체제의 비민주적 성격과 核開發과 같은 반평화적 정책에 대한 외부세계의 비판을 內政干涉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임.

— 북한은 이 내용으로 북한의 NPT탈퇴 이후 북한에 대해 가해질지도 모를 國際的 制裁에 대해 남한이 공동대처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제적 쟁점으로 대두된 핵문제를 民族內部問題로 전환하려는 것임.

— 한편 북한은 이로써 反美 自主化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和合과 信賴의 圖謀

○ 다음은 「10大綱領」 제5항의 내용이며, 제5항은 民族大團結의 方途

16) 리현도, “민족단합의 대현장(4), 동족끼리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3년 4월 30일.

로 「화합과 신뢰의 도모」를 제시하고 있음.¹⁷⁾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 「10大綱領」 제5항에서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화합과 신뢰의 도모」를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역시 체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외부적 압력을 피하려는 것임.

— 북한은 이를 통하여 남한에서의 미군과 핵무기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북한에 대한 핵사찰 요구의 폐기를 주장하려는 것임.

— 북한은 이를 통하여 남한의 흡수통일 의지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임.

(3) 民主主義의 實現

○ 다음은 「10大綱領」 제6항의 내용이며, 제6항은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民主主義의 實現」을 제시하고 있음.¹⁸⁾

17) 엄일규, “민족단합의 대현장(5), 민족의 화합과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 「로동신문」, 1993년 5월 2일.

18) 리형진, “민족단합의 대현장(6), 전민족을 애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기치,” 「로동신문」, 1993년 5월 4일.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의 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 「10大綱領」 제6항에서 민족대단결의 方途로 「民主主義의 實現」을 제시하는 의도는 남한내에서 親北團體의 활동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내의 비제도적 통일운동 활성화, 반체제활동 관련 구속자의 석방 등을 주장하려는 것임.

(4) 物質的·精神的 財富의 保護

- 다음은 「10大綱領」 제7항의 내용이며, 제7항은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물질적·정신적 재부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음.¹⁹⁾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19) 류 광, “민족단합의 대헌장(7),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 「로동신문」, 1993년 5월 6일.

- 「10大綱領」 제7항에서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물질적·정신적 재부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협력 및 투자, 그리고 신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당면한 經濟危機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임.
 -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經濟支援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서방 자본주의국가 및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임.
 - 북한은 통일운동을 통하여 해외교포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동원하려는 것임.

(5) 接觸·來往·對話

- 다음은 「10大綱領」 제8항의 내용이며, 제8항은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접촉·내왕·대화」를 제시하고 있음.²⁰⁾

8. 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들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내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 「10大綱領」 제8항에서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접촉·내왕·대화」를

20) 송철영, “민족단합의 대현장(8),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 「로동신문」, 1993년 5월 8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임.

- 북한은 이를 통하여 북한이 평소에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하나의 강토를 두 동강낸 최대의 물리적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콘크리트장벽」의 제거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의 접촉과 대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처형하는데 사용되는 반공, 반통일 파쇼적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南韓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안기부, 기무사의 해체 등을 주장하려는 것임.
- 북한은 이것을 제거한 이후 북과 남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이 차별없이 자유로이 오가면서 제한없이 접촉·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서 남한내의 진보적 통일운동세력을 고무하는 한편, 南北政治協商會議의 기반을 조성하려 하고, 남한정부의 對北 窓口一元化 원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²¹⁾

21) 북한은 “현실적으로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은 통일문제의 해결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과의 접촉과 대화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해 나르고 있음. 겨레의 이러한 지향에 맞게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면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의 기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송철영, “민족단합의 대현장(8),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 「로동신문」, 1993년 5월 8일.

(6) 全民族的 連帶性的 強化

- 다음은 「10大綱領」 제9항의 내용이며, 제9항은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전민족적 연대성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²²⁾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

- 「10大綱領」 제9항에서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전민족적 연대성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남한, 해외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연대·연합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써 反統一勢力을 고립·약화시키려는 것임.

—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및 「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의 조직과 활동을 고무하려는 것임.

(7) 祖國統一 貢獻者에 대한 評價

- 다음은 「10大綱領」 제10항의 내용이며, 제10항은 民族大團結의 方

22) 호영길, “민족단합의 대현장(9), 민족단합을 위한 획기적인 방도,” 「로동신문」, 1993년 5월 10일.

途로 「조국통일 공헌자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음.²³⁾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뒤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10大綱領」 제10항에서 民族大團結의 方途로 「조국통일 공헌자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통일운동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임.

— 북한은 조국통일에 헌신한 사람들 자신과 그 後代들에게 특혜를 베풀겠다고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동원하려고 함.

— 북한은 남한과 해외동포 사회에서의 統一運動을 고무하려고 함. 북한은 특히 김 구, 최덕신과 같이 한때 반공주의적 입장을 가졌다가 북한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親北統一運動에 폭넓은 동참을 호소하고 있음.

— 북한은 이를 통하여 남한내에서 上層部 統一戰線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23)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현장(10), 전민족을 폭넓은 단합의 길로 떠미는 추동력,” 「로동신문」, 1993년 5월 12일.

2. 「4個 對南要求事項」의 內容 分析

- 다음은 「10大綱領」과 함께 발표된 「4個 對南要求事項」임. 이는 현재의 남한정부가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民族自主를 지향해 나가야 하며, 민족자주를 지향해 나간다는 표시로서 밝혀야 할 4가지 태도를 지적하고 있음.²⁴⁾

첫째로, 외세의존정책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의지를 표명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연습을 영원히 중지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4個 對南要求事項」을 제시하였다고 분석됨.

—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調律하려는 것임.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전향적 통일정책의 의지를 표현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한 말과,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의 기초인 「문민정부」라는 말을 불모로 네가지 사항의 수용을 촉구하려는 것임.

— 남한의 정치·군사적 對外協力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체제위협의 外的 要因을 제거하는 한편, 남한의 국력을 약화시켜 남

24) “강성산대의원의 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위한 전민족대 단결 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3년 4월 8일.

한에 대한 힘의 상대적 우위를 도모하려는 것임.

- 남한이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의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남한내에 自主性에 관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켜서 남한의 내부정세를 취약하게 하려는 것임.
- 북한이 그 동안 계속 주장해 오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족내부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북한의 대남요구는 앞으로 「자주화」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평가됨.
- 그러면서도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철수 의지 표명만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음.

IV. 「10大綱領」 宣言 以後 北韓의 對南政策 動向

- 「10大綱領」 宣言 이후 北韓은 대내적으로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와 체제안정을 위한 북한주민의 정치사상적 단결을 도모하고 해외동포들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해 「10大綱領」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북한은 「10大綱領」을 지지·관철하기 위한 대규모의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한편,²⁵⁾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

25) 4월 10일 평양시 평양체육관에서 1만명의 군중이 참석하는 「10大綱領」 지지·관철 군중대회가 열렸으며, 4월 13일 이후 「10大綱領」 지지·관철 군

음.

— 한편 5월 11~12일 在日 朝總聯 중앙위 제16기 2차회의는 金日成의 「10大綱領」 실현을 위한 「모범단체 창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²⁶⁾ 朝總聯은 6월 8일 日本 도쿄에서 商工人中央大會를 열고 「10大綱領」 실현투쟁과 애국사업(對北 지원사업)의 강화를 결의하였음.

○ 한편, 북한은 「10大綱領」에서 밝힌 대남정책의 연장선상에서 南韓 體制의 力量 弱화를 위한 統一戰線戰術을 계속 추진하고, 남한에 대해 남북한관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特使交換을 제의하였음.

1. 南韓의 體制力量 弱화를 위한 統一戰線戰術 推進

○ 북한은 남한내에 「10大綱領」의 내용을 선전·선동함으로써 統一論議를 둘러싼 남한내 정치적 균열을 유도하는 한편, 8월 15일로 예정된 제4차 汎民族大會를 위해 통일투쟁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려는 統一戰線戰術을 시도하고 있음.

가. 書信 發送

○ 북한은 남한의 주요 정당·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書信을

중대회는 함경남도, 평안남도, 南浦市, 開城市 등 전국 道, 市 단위로 확산되었음.

26) 「內外通信」, 1993년 6월 3일.

발송하여 「10大綱領」의 정당성과 그것의 실천을 선전·선동하는 統一戰線戰術을 추진하고 있음.

- 4월 19~20일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0大綱領」의 실천대책을 논의하면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들에게 「10大綱領」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자는 결의를 한 후, 「10大綱領」의 실현을 호소하는 편지를 채택하여 남한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 및 국제사회당에 발송했음.
- 4월 24일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10大綱領」 실현을 위한 「7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남한정부 및 정당·단체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그리고 해외동포 등 모두 53명에게 발송했음.

나. 放送을 통한 宣傳·煽動

- 또한 북한은 放送을 통해서 남한정부를 비난하는 한편, 남한의 청년·학생 및 시민들에게 「10大綱領」에 기초한 통일전선전술을 실천하도록 宣傳·煽動하고 있음.
- 6월 7일 북한은 「중앙방송」을 통해서 韓總聯(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韓總聯의 활동을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하는 남한정부의 방침을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파쇼적 폭거”이며, “이는 남조선의 현집권세력이 이전의 군부파쇼정권과 다를 바 없는 반통일세력임을 드러낸 것”이라

고 비난함. 또한 새정부가 진실로 문민정치를 하려 한다면 청년 학생들의 「애국투쟁」을 장려하고, 이들을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폭압기구들을 즉각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음.²⁷⁾

— 북한은 韓總聯이 지난 5월 29일 북한학생 대표, 해외청년학생 대표와 전화를 통한 「범청학련」 제1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 “통일을 위한 장한 일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옹호했음.

— 북한은 韓總聯의 가두시위에 대해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고무했음.

○ 6월 10일 북한은 6·10민주항쟁 6주를 맞아 「평양방송」의 논설을 통해 남한국민들의 중단없는 투쟁을 촉구하면서 남한정부에 대해 「10大綱領」의 실현협조를 요구했음.²⁸⁾

— 북한은 韓總聯의 통일운동 시위에 대해 “6월 인민항쟁때 못다 이룬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투쟁의 계속이며 정의와 애국에 투철한 그들의 기개를 다시금 과시한 것”이라면서 남한국민들의 시위투쟁을 부추김.

— 북한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문민정치와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과거 파쇼독재자들을 비호, 애국청년들을 탄압하고 외세의존 정책에 매달림으로써 “이전 독재자들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27) 「內外通信」, 1993년 6월 8일.

28) 「內外通信」, 1993년 6월 11일.

고 비난하면서 5, 6공체제의 법적·제도적 청산, 김일성의 「10大綱領」 실현협조, 북한측의 「4個 對南要求事項」 수용, 특사교환 문제 등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 등을 요구했음.

- 이와 함께 6월 21일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10大綱領」에 의거한 한국민들의 통일투쟁을 격렬히 선동했음.²⁹⁾
 - － 북한은 「10大綱領」을 조국통일의 대강령으로 선전하는 가운데 한국민들이 이에 의거하여 통일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을 촉구했음.
 - － 특히 북한은 「10大綱領」을 “지난날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까지도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서 새출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고무적 기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각계각층의 호응을 촉구했음.
- 6월 23일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내세워 보안법 철폐, 통일운동 탄압중지를 요구했음.³⁰⁾
 - － 북한은 한국정부가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도 「6·12 학생회담」을 무산시키고, 보안법을 유지하며 「10大綱領」을 외면하는 등 「대결과 분열, 전쟁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하여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

29) 「內外通信」, 1993년 6월 23일.

30) 「內外通信」, 1993년 6월 23일.

면서 정부당국의 對北政策 전환을 촉구했음.

다. 汎民族大會 開催 推進

- 북한은 汎民聯으로 하여금 汎民族大會 開催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한내에서 통일전선 투쟁을 도모하려 하고 있음.
- 汎民聯은 1993년 5월 29~30일, 北京에서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8·15를 기해 서울에서 제4차 汎民族大會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통일전선투쟁을 강화하기 시작했음.
 - － 汎民聯은 민족대단결 실현투쟁의 확산,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및 대북 핵압력제재 저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철폐,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도출 등을 당면투쟁과업으로 설정하면서 범민족적 투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 － 汎民聯의 당면투쟁과업은 「10大綱領」의 각 항목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그 실천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92년 8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汎民族大會를 계기로 결성된 汎民聯 산하 계층별 조직인 汎靑學聯도 5월 29일 韓總聯 소속 학생들과 북한 조선학생위원회 및 해외 청년대표 사이의 전화통화로 제1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여 6월 12일의 판문점회담에 합의하고, 전민족대단결 원칙하의 통일실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안기부 등 철폐, 제3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 실현 등 4개항을

당면목표로 하는 共同決議文을 채택했음.

- 7월 4일 범민련 해외본부는 「한국정부에 보내는 요망서」를 발표하여 한국 정부의 대화창구 일원화정책 포기 및 제4차 범민족대회의 서울개최 보장 등을 주장했다.
- 범민련과 범청학련은 이번 제4차 범민족대회와 제3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을 통해 김일성이 제시한 「10大綱領」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特使交換 提議

- 북한은 5월 25일 남북한 사이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총리급의 특사교환이라는 대남정책에 관한 새로운 전술적 수단을 제시했음.
- 북한이 특사교환을 제의하게 된 것은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남북한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한 대응이자, 5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황인성 국무총리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에 대한 답신으로 나온 것인 바, 북한이 그 대응에 있어서 특사교환이란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意圖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 결의를 희석시키려는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즉 NPT탈퇴 발효시한이 6월 12일로 임박해지면서 對北

制裁가 전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자,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대북제재가 시작될 경우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내세워 한국과 미국의 對北共調體制를 약화시키려는 것이었음.

- 북한은 한국 신정부의 북한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탐색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족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한편, 신정부의 統一政策 基調가 「民主的 國民合意, 共存共榮, 民族福利」로 밝혀지자, 북한은 「10大綱領」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한편 특사교환 제의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체제 유지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고자 한 것임. 동시에 特定 人物을 협상의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한국내의 대북정책 관련 당사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성하는 전술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새로운 방식의 對南對話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북한은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특성상 그간에 진행된 남북고위급 회담이 계속될 경우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였으나 북한이 처하고 있는 體制危機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를 지속해야 할 입장에 있었음. 이에 특사교환이라는 일종의 간접 정상회담 형식의 남북협상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일괄 타결을 기도하려는 의도를 보임.
-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특사교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로 분석됨. 북한은 한국이 核問題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자 대화자체를 전면 거부하기가 어려워서 특사교환 카드를 제시하는 한편,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민족대단결 전략에서 이용하고, 안받아들이더라도 북한의 對話意志를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6월 26일 수정 제의가 오고가던 특사교환 제의를 철회했던 바, 그 의도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은 6월 10일 對美會談에서 NPT탈퇴유보를 미국에 양보해준 대신 미국으로부터 核不使用, 체체인정을 보장받는 등 성과를 획득했기 때문에 대남대화가 더 이상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 북한은 남한 신정부의 공세적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향후 있게 될 제2차 美·北韓 고위급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사교환 카드를 철회한 것으로 보임. 즉 남한의 신정부가 核·經協連繫라는 보수적 정책을 지속하고, 對北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 미국에게 미·북한 제2차 회담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 말 것을 촉구하자 북한은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면서 향후 남북관계에서 主導權 장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특사교환을 철회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미·북한회담을 통하여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대미관계 개선을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정부가 자주적이지 못하

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고 북한정권의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선전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V. 結 論

1. 北韓의 對南政策 展望

- 북한의 대남정책은 「霸權的 革命戰略」으로부터 「現狀維持的 競爭戰略」으로 移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즉 3대혁명역량의 약화라는 국내의 정세변화 속에서 북한은 對南政策 결정에 있어서 北韓體制의 생존과 유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대남정책의 戰略的 目標은 남북한 분단이라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체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의 체제역량을 약화시키려는 體制競爭을 도모하는 것에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制度統一을 거부하고 두개 地域政府의 自律性을 강조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고, 1995년을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목표의 해로 설정하는 한편, 南北關係改善을 行動方針으로 설정하고 남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北韓은 남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이

의도했던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核問題를 둘러싼 國際的 壓力이 증대하자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實效性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북대화를 중단해 버렸음.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0大綱領」을 발표하였는 바, 「10大綱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담고 있으며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것을 基調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남한에 대해 평화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천명을 통해 그 동안 북한이 남한에 대해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던 國際社會의 評價를 불식시키고 그럼으로써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함. 특히 북한은 「10大綱領」 선언을 통해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압력을 회피하려고 함.
 - 북한체제를 위협할지도 모를 국제사회의 대북간섭을 배제하면서, 北韓體制 強化를 위한 북한주민들과 해외교포들의 動員을 도모하려고 함.
 - 남한과의 대화·접촉을 시도하면서도³¹⁾ 남한 체제약화와 대화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統一戰線戰術을 계속 강화하려고 함.

31)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체제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외부세계와의 교류 및 협력의 先決課題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재개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특히 북한은 남한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제4차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8월 15일까지 對南誹謗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됨.

2. 南韓의 考慮事項

- 북한의 「10大綱領」 宣言의 一次的 目的이 核問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회색시키고자 하는 데 있음을 감안, 核問題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는 동안 國際的 共助體制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
- 현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10大綱領」에 대해 공식 대응할 경우, 핵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북한의 企圖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바, 북한의 對南 平和攻勢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對應을 유보하도록 함.
- 民間次元의 南北經協을 적극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核·經協 連繫政策을 견지함으로써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인의 방북금지 등 對北 경제지원 및 경협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그러나 북한이 「10大綱領」에서 共存·共榮·共利의 圖謀,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政爭 中止,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財富의 保護 등을 주장한 것은 기존 입장에 비해 宥和的인 측면이 있다고 간주되는 바, 향후 북한의

態度 變化를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의 眞意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대처하도록 함.

— 핵문제 해결 등 북한의 變化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證據가 보일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對北政策을 고려함.

○ 북한의 民族大團結論에 기초한 統一戰線戰術에 대응하기 위하여 韓國民族主義를 統一理念과 연계시켜 재정립함과 동시에 우리 내부의 國論分裂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과 개혁을 추진해야 함.

—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復古主義나 感想主義가 아닌 미래지향적 민족주의로서, 대외적으로 反外勢 일변도의 抵抗的 民族主義를 초월하여 國際主義와 병존할 수 있는 포용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自由·平等·福祉 신장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아야 함.

— 「주체」에 입각한 북한의 民族大團結論에 대한 韓國民族主義의 比較優位를 국민적 차원에서 홍보해야 함.

— 非政府 次元의 統一論議를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통일관련 기구·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輿論 收斂機能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입안한 신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國民的 合意와 參與를 적극 유도함.

〈別添〉「10大綱領」內容 要約

區 分	內容 (北韓 主張)	意 圖	備 考
①자주·평화·중립적 통일국가 창립	- 연방국가, 중립국가	- 연방제안 견지	민족대 단결의 목표
②민족애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한 단결	- 민족자주성을 생명으로 단결 - 시대주의와 민족혁명주의 배경	- 민족주의 감정유발	민족대 단결의 이념적 기초
③공존, 공영, 공리도모, 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	- 상호 존중 - 상호 불침해 - 함께 진보와 번영 - 지역적·계급적 이익 배제	- 남한의 통일정책기조 의식 - 대북간섭 배제	민족대 단결의 원칙
④분열·대결 조장하는 일체의 경쟁중지	- 모든 형태의 경쟁 및 비방중지 - 외세침략과 간섭, 공동대처	- 반외세 통일전선 구축 - 핵문제 민족내부화 - 정신대 공동대처	민족대 단결의 방도(1)
⑤북침·남침, 승공·적화 의구심을 버리고 신뢰·단합	- 위협·침략금지, 상대방제도 불강요 - 상대방 흡수 배제	- 북한 개방·개혁·민주화 요구 저지 - 흡수통일 저지	민족대 단결의 방도(2)
⑥민주주의 귀중히 여기며 통일의 길에 함께 손잡자	- 통일논의와 활동자유보장, 친북찬남 불시비 - 모든 정치범 석방 복권	- 비제도적 통일논의 고무, 좌익세력 합법화 - 구속자 석방	민족대 단결의 방도(3)

區 分	內容 (北韓 主張)	意 圖	備 考
⑦개인·단체 소유 물질적·정신적 재부 보호, 대단 결에 이롭게 이용 장려	- 국가적·협동적·사 적 소유 인정 - 개인·단체의 자본·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 동이권 보호 - 과학·교육·문화· 예술·언론·출판· 보건·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사회 적 명예, 자격인정 및 혜택보장	- 대북투자 유인 - 해외교포의 경제 적 지원 동원	민족대단결의 방도(4)
⑧접촉·내왕·대 화를 통한 이해· 신뢰·단합	- 접촉·내왕 막는 온갖 장애물 제거 - 각당 각과 각계각층에 동등한 대화기회부여 - 쌍무적·다무적 대화 기회 부여	- 보안법 철폐, 안기 부 해체, 콘크리 트 장벽 제거 - 정치협상기반 조성	민족대단결의 방도(5)
⑨남북·해외의 전 민족 연대성 강화	- 통일에 유리한 것 지 지, 해로운 것 함께 배 격 - 모든 정당·단체와 각 계각층의 조직적 연합	- 범민련, 범청학련 조직 확대	민족대단결의 방도(6)
⑩민족단결·통일 공헌자 높게 평가	- 공을 세운 사람, 애국 열사 및 그 후대에 특혜 - 과거를 뒤우치면 민족 반역자도 후대	- 남한내의 진보적 통일운동 선동 - 상층부 통일전선 구축	민족대단결의 방도(7)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일본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
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
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
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
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
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北韓의對南政策**

統一情勢分析 93-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7월 일
發行日 1993년 7월 일
